

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2899호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2021. 11. 17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시민의 공동체 회복과 창업 및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「김포시 공유오피스」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

3. 주요내용

- 공유오피스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공유오피스의 시설 사용 자격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시설 사용신청 및 승인, 사용료 부과 및 반환에 관한 규정(안 제6조~제9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운양동 환승센터 내 설치 예정인 공유오피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업무공간이 필요한 기업이나 프로젝트팀, 1인 프리랜서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 편의시설인 공유공간의 설치 및 운영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, 안 제6조(사용신청) 제출일(5일전)과 안 제9조(사용료의 반환)제3호 각 목의 반환 요율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바, 위원회 심사 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체계화하여 사용신청 및 사용료의 반환 규정 적용에 있어 행정적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.